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 1 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본회에 등록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에 적용한다.
② 본회 산하 시도연맹 및 전국연맹체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2.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행위)한 자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선수등록 업무 및 규정 심의
5.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 5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법률, 인원분야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 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스포츠인권익센터 설치) 본회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사무국이 설치 및 운영한다.

제15조(시도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① 시도체육회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선수 및 지도자출신,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상담사, 법률전문가 등과 행정지원이 가능한(해당단체, 시도교육청 등)직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도체육회 및 선수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행정지원 직원을 제외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해당 시도체육회 및 본회의 선수위원회(또는 선수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역할은 해당시도 및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선수인권과 관련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TF팀 구성, 실태조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16 조(조사대상) ①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체육회, 시도체육회, 본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스포츠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 침해(폭력·성폭력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무분별한 성별확인 요구와 관련하여 의무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수인권침해(성희롱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제18조(징계)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15. 2. 5 변경>

- 제 17 조(조사 및 구제절차) ①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시도체육회, 본회는 1차 조사 및 처리기관이며 대한체육회는 2차 처리기관이다.
- ② 대한체육회에 신고 접수(또는 진정)된 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 구제 기관인 본회 또는 시도체육회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한체육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 ④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본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당해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2. 시도체육회는 당해 대한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3. 본회와 시도체육회간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소관기관을 결정한다.
- ⑤ 대한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본회와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기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징계협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징계)

-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

이 징계 의결한다.

1.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 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3.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영구제명

4.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

5. 제1호와 제4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벌
하며,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 한다.

6. 징계일 현재 선수, 지도자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수, 지도자들을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 부터 발생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대한체육회와
본회 또는 시·도체육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한 단체의 위원회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
한다.

제19조(재심청구) ① 제18조 제4항의 본 회의 1차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직접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의 재심
기간 중에도 당해단체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조사 및 직접 소환 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차 재심결과를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징계대상자 및 징계
대상자의 소속단체장, 소속 시·도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청구에 대한 체육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0조(선수위원회 설치 의무) ① 본회 및 시·도체육회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회 및 시·도체육회의 선수위원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해당 규정에 준용하여 제정하여야 한
다.

③ 본회 및 시·도체육회의 선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 선수/지도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

련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및 행정처리) ① 본회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스포츠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피해자 및 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 8.11)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12.27)로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11.05.)로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5.02.05.)로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9.12.13.)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보호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수보호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폐지되며 이 규정에 의한 선수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선수등록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선수등록 규정 제2장(선수자격심의위원회)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으로 대체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는 자체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전이라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개정 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